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배진석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3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배진석·박성만·박용선·
장경식·이상구·정상구·
이진락·배한철·이운식·
오세혁·박정현·도기욱·
윤창욱·김희수·김종영·
배영애의원(16명)

찬 성 자 : 12명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수립에 부합토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 원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시 공무원 및 기관·단체·개인 등에 포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재지 시·군 인접”을 “소재지 시·군 및 인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원자력 산업진흥 및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p>
<p>제5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지역과 인근 지역의 방재대책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p>	<p>제5조(세출) ① ----- ----- ----- -----</p>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도 자체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2. 3. (생략)
<신설>
4. ~ 8. (생략)

제6조(출자 및 경영)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

1. -----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 -----

-----.
2. -----
----- 금액
 으로 한다.

② -----

--.

1. ----- 소재지 시·군 및 인접 -----

2. 3. (현행과 같음)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6조(출자 및 경영) ① -----
----- 다음 각 호에 -----

수 있다.

1.·2.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8조 (생략)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도지사는 원자력 산업진

흥 및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

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지원할수 있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 련 법 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안주무부서	원자력산업정책과	통 보 (조 치) 일	2017. 9. 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개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원자력산업정책과)

조례명 :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원자력산업정책과		의견없음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이 수반되는 조항은 제8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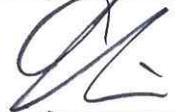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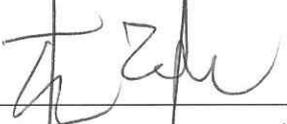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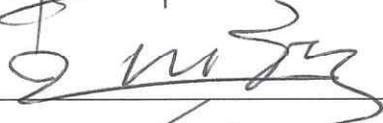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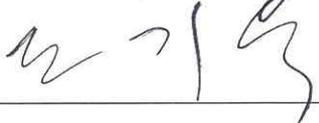
- 안 제8조(포상)의 내용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원자력산업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최종운(054-880-2513)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배진석		
박성환		
박용선		
장경석		
이상구		
조상구		
이진환		
내권환		
이운석		
윤세환		
박재환		
노기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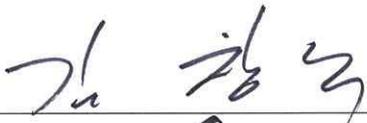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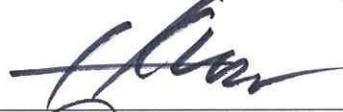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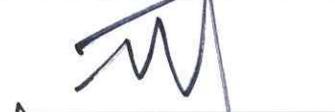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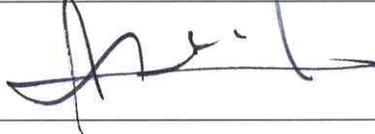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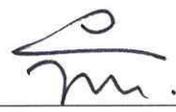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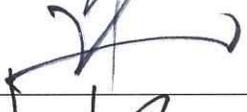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신창석	신창석	
김희수	김희수	
김종익	김종익	
배영미	배영미	

찬성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김창수		
박현홍		
윤성규		
김용남		
김리익		
윤종도		
이승호		
이태석		
함지철		
박복하		
조현일		
최병관		